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23
----------	-------

발의연월일 : 2025. 6. 18.

발 의 자 : 박균택 · 박 정 · 허 영
양부남 · 김주영 · 한민수
박해철 · 박홍배 · 이성운
이건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1971년 이래,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강력한 규제로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해왔으나 국가로부터의 보상은 미미했고, 마땅한 활용 또는 처분도 쉽지 않았음. 결국,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 상당수는 고령임에도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구역 내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던 주민과 그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종전 연면적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개축 · 재축 ·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건축 행위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각 호 신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던 주민(해당 주민의 건축물 등의 권리를 승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건축물을 종전 연면적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개축·재축·증축하려는 경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u>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 ----- ----- -----. 1. <u>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2. <u>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던 주민</u>

	<u>(해당 주민의 건축물 등의 권리를 승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u> <u>이 해당 건축물을 종전 연면적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개축·재축·증축하려는 경우</u>
--	--